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구 미 시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6. 7.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장애인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시각장애인의 근로 연계를 통해 자립 생활 활성화를 도모하고, 사업을 안정적·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사무를 위탁하고자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 제1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무명 :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 사업

나. 추진근거 및 필요성

- 1) 「장애인복지법」 제21조
-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
- 3) 「구미시 장애인일자리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
- 4)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 제16조

다. 위탁사무

- 1)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 사업 참여자 모집 및 선발, 관리
- 2) 참여자 직무 배치, 사업운영 전반

라. 위탁기간 : 위탁개시일로부터 3년간 * 2027. 1. ~ 2029. 12.

마.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216,084천원 * 2027년 예산 기준

(단위: 천원)

계	인건비	퇴직금	운영비	비 고
216,084	178,464	17,028	20,592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선정심의위원회 심의

사. 적정성 검토결과 : 적정 ※ 2026년 제1차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3. 부서의견

- 해당 사업은 보건복지부 주관 사업으로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시각장애인 관련 전문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며, 「구미시 장애인일자리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시각장애인안마사를 운영·관리하는 사업의 특성상 관련 업무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이 요구되므로 시각장애인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 이에 장애인일자리 채용 및 채용인력 관리, 자원 연계 등 사업 운영 전반을 민간위탁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장애인복지법」 제21조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

(3) 「구미시 장애인일자리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

(4)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 제16조

나. 예산조치 : 2027년도 예산편성

다. 성과평가 결과 및 감사결과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 사업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1. 평가개요

- 기 간 : 2026. 4. 15.(수) ~ 17.(금)
- 대 상
(위탁기관) (사)대한안마사협회 경북지부
(대상사업)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 사업
- 평 가 자 : 3명(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지원팀장, 담당자)
- 평가방법 : 운영점검 및 성과평가 기준표에 의한 서면평가
- 위탁기간 : '24. 1. 1. ~ '26. 12. 31.(3년간)
- 사업내용 :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안마사 배치 및 서비스 제공
- 평가지표 : 민간위탁사무 평가지표
 - 공통분야(40) : 사업계획(10), 인력관리(10), 예산관리(10), 성과관리(10)
 - 개별분야(60) : 전문성(15), 자원관리(15), 사업실적(15), 만족도(15)
 - 감 점(-5) : 임금체불 및 지도점검 개선사항 이행여부 등(-5), 경고(-3), 주의(-1)

부문	공통분야(40점)				개별분야(60점)				감점 요소	총점
평가항목	사업계획	인력관리	예산관리	성과관리	전문성	자원관리	사업실적	만족도	감사 결과	
배점	10	10	10	10	15	15	15	15		100
평점	8	8	4	6	12	9	9	12		68

2. 평가결과

- 평가점수 : 68점(보통)
- 총 평
 - 취업이 어려운 시각장애인에게 장애 유형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참여 기회 확대 및 소득 보장을 지원함
 - 배치기관을 추가 확보하여 참여자의 선택권 확대 및 민간취업 연계율을 높이기 위한 직업상담 및 사후관리 체계 강화 필요

2025년도 민간위탁사무 감사 결과

1. 감사개요

- 위탁사무 :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 사업
- 감사기간 : 2026. 4. 24.(금) ~ 5. 7.(목)
- 감사범위 : 2025. 8 ~ 2026. 4. 위탁업무 관리·운영실태 전반
- 감 사 반 :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원팀장 외 1명
- 감사방법 : 서면감사

2. 감사결과

- 지적사항 : 3건(시정 2건, 계도 1건)
- 감사내용

분 야 별	감사내용 (검토 또는 조치사항)	조치계획(의견)	비고
운영전반	참여신청서류 확인 및 관리 미흡	참여신청서류 확인 및 관리 철저	계도
	참여조건합의서 필수 기재사항 미작성	참여조건합의서 미작성 부분 수정 및 기입 철저	시정조치
예산회계분야	운영비 지출증빙서류 일부 누락	예산 집행 시 지출증빙서류 확인 및 관리 철저	시정조치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 제21조(직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 지도, 직업능력 평가, 직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 알선,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직업재활훈련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과 재활사업에 관한 조사·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 제13조의2(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여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일자리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종류 및 운영,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구미시 장애인일자리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 제4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재계약 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시설
2. 비영리민간단체
3. 특수교육관련기관

②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 지침과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5조(재정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위탁·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

제16조(의회 동의) 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정한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도록 하는 경우
2. 위탁기간 1년 미만의 일회성 사무 또는 연간 위탁금액 1억원 이하의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기존의 민간위탁 사무를 재위탁 및 재계약하는 경우
2. 기존의 민간위탁 사무의 예산이 작년 대비 혹은 동의안 대비 30% 이상 증감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 사업 민간위탁 시 사업운영에 따른
사업 참여자 인건비·운영비 지원에 따른 지속적인 재정 소요 발생
- 「구미시 장애인일자리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재정지원)

2. 비용추계의 전제 : 2026년도 지급 기준에 준하여 산정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 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합계
세출	○ 인건비	178,464	183,744	189,288	551,496
	○ 퇴직금	17,028	17,545	18,073	52,646
	○ 운영비	20,592	21,120	21,780	63,492
	소계(b)	216,084	222,409	229,141	667,634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천 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합계
국 비		172,867	177,927	183,313	534,107
도 비		12,965	13,345	13,748	40,058
시 비		30,252	31,137	32,080	93,469
민 간		-	-	-	-
기 타		-	-	-	-
합 계		216,084	222,409	229,141	667,634

5. 부대의견

- 본 추계결과는 보건복지부 본예산 확정 및 인건비 상승에 따라
매년 재정소요액이 변경될 수 있음.

6. 작성자 :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원팀 유지현(☎480-5168)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연도	구 분	금액(천원)	산 출 근 거
	합 계	667,634	
2027	소 계	216,084	
	인 건 비	178,464	· 1,352천원 × 11명 × 12월 = 178,464천원
	퇴 직 금	17,028	· 1,548천원 × 11명 × 1월 = 17,028천원
	운 영 비	20,592	· 156천원 × 11명 × 12월 = 20,592천원
2028	소 계	222,409	
	인 건 비	183,744	· 1,392천원 × 11명 × 12월 = 183,744천원
	퇴 직 금	17,545	· 1,595천원 × 11명 × 1월 = 17,545천원
	운 영 비	21,120	· 160천원 × 11명 × 12월 = 21,120천원
2029	소 계	229,141	
	인 건 비	189,288	· 1,434천원 × 11명 × 12월 = 189,288천원
	퇴 직 금	18,073	· 1,643천원 × 11명 × 1월 = 18,073천원
	운 영 비	21,780	· 165천원 × 11명 × 12월 = 21,780천원

소 관 부 서		장애인복지과
입 안 자	과 장	박 연 길
	팀 장	신 미 현
	담 당 자	유 지 현 (480-5168)